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4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5.

발 의 자:이광재・김두관・김승원

김영배 · 김정호 · 민홍철

박재호 · 송재호 · 이상헌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,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·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,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단지 및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

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,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·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함(안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중 "10킬로미터"를 "20킬로미터"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제12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·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주변지역개발사업) ① 국 | 제12조(주변지역개발사업) ① |
| 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 | |
|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| |
| 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 | |
|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 | <u>20</u> 킬로미터 |
| <u>미터</u> 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 | |
| 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| |
| 할 수 있다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14조(재정 지원) (생 략) | 제14조(재정 지원) <u>①</u> (현행 제목 |
| | 외의 부분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② 국가는 제12조에 따른 주변 |
| | 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・도로 |
| | 등 연계교통시설과 「물류시설 |
| |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|
| | 률」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 |
| |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|
| |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|
| | <u>수 있다.</u> |